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문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214 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 김문수·조인철·박희승

정일영 · 김남근 · 양부남

김현정 • 문금주 • 황명선

정진욱 • 이건태 • 강경숙

백승아 • 진선미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의 시정 또는 변 경명령, 징계의결 요구,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, 학생정원 감축 등의 행정적·재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학원에 대해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의 금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.

이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·선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 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 신설).

법률 제 호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과태료) ①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8조(과태료) ① 제8조제4항을
	위반하여 선행학습을 유발하는
	광고 또는 선전을 한 자에게는
	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	<u>한다.</u>
	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
	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	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부
	<u>과·징수한다.</u>